(토목-002) 빗물 저류시설 우수 유입사고

공사명	○○ 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사고일시	2019년 7월 31일(수) 08:20분경		기상상태	Щ
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사고 종류	기타(익사)	
구조물 손실	_	인적피해	사망 3명	
장비 손실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	해당() , 해당없음()	

가. 사고개요

1) 공사개요

○ 공사종류 : 방재시설 확충

○ 공사규모 : 저류배수터널(L=4.7km, D=5.5~10m), 정류지 3개, 수직구 6개, ○○1빗물펌프장 (○=840㎡/분) 재설 및 체험관 건립 등

○ 공사기간 : 2013.5~2019.12

2) 사고경위

○ 빗물 저류터널 유출부 펌프 등 점검을 위해 작업자 3명이 07:10분경 터널하부로 내려갔다가 고립됨

3) 사고원인

○ 자체점검을 위해 작업자(3인)가 저류터널에 진입한 상태에서 국지성 호우에 따른 집수된 빗물의 유도배수를 위해 유수지 수문(2개소)이 자동 개방되어 저류터널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터널 내부 수위가 갑작스럽게 상승(FL.3.8)되는 상황에서 수위가 상승하는 것을 알지 못한 작업자가 탈출하지 못하고 터널내부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됨

나. 재발방지대책

-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낙반·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하며 재해 발생위험을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등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설치 장소를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